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00

발의연월일: 2024. 6. 25.

발 의 자: 장종태·김선민·김 윤

이재관 • 문정복 • 문진석

이병진 · 장철민 · 조승래

김남희 • 박정현 • 정준호

황정아 · 백승아 · 윤종군

정성호 · 박용갑 의원

(17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체계적인 재활의료 지원을 위하여 권역별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및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전충남세종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2023년 5월30일 전국 최초로 개원해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소아재활치료는 고비용·저수익으로 민간이 운영을 기피하는 분야이며, 어린이재활병원은 구조적으로 적자가 불가피해 국가의지원 없이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만으로는 안정적인운영이 불가능한 실정임.

이에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통한 재정지원이 가능한 비용

지원 대상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추가해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안정적인 운영과 소아재활치료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

법률 제 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업무수행 및 업무수행을 위한 시설·인력· 장비 등을 확충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22조(비용지원) ①국가와 지방 | 제22조(비용지원) ① (현행과 같 |
| 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 승) |
|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 |
| 또는 일부를 예산 또는 「국민 | |
| 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 | |
| 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u> <신 설></u> | 2.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업무수 |
| | 행 및 업무수행을 위한 시설ㆍ |
| | 인력·장비 등을 확충하는 데 |
| | <u>소요되는 비용</u> |
| <u>2</u> . ~ <u>8</u> . (생 략) | <u>3</u> . ∼ <u>9</u> . (현행 제2호부터 제8호까 |
| | 지와 같음)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